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. 12. 13 선고 2022나149 판결 [계약금 반환 청구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

피고, 항소인 B

변 론 종 결 2022. 11. 22.

판 결 선 고 2022. 12. 13.

제1 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. 7. 6. 선고 2022가소173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2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그 아들을 통해 2021. 9. 2. C와 사이에서 공사대금을 6,000만 원(계약금 3,000만 원, 중도금 1,000만 원, 잔금 2,000만 원)으로 정한 주택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.

나.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21. 7. 6. C이 지정한 D 명의계좌로 3,000만 원을 송금하였다. 그런데 C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, 이에 원고와 C은 2021. 11. 6. 공사대금을 6,000만 원 그대로 하되 계약금을 2,000만 원, 잔금을 4,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(이하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을 통틀어 ‘이 사건 공사도급계약’이라 한다), C이 2021. 7. 6. 지급받았던 3,000만 원 중 1,000만 원은 2021. 11. 12.까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.

다. 그러나 C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, 반환을 약정한 1,000만 원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.

라. 피고는 C의 배우자이고, 현재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4,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당사자의 주장 요지

1) 원고의 주장

피고는 강릉시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인바, 피고의 직원인 C이 피고 대신 원고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.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므로,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3,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) 피고의 주장

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피고의 남편 C이 원고와 교섭하여 체결한 것일 뿐, 피고는 계약체결 과정에

관여한 사실이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.

나. 구체적 판단

위 인정사실,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,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C으로 봄이 상당하므로, 피고가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.

- ① F(원고의 아들)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교섭한 적이 없고, C과만 계약내용에 관하여 교섭하였다.
- ② 원고는 2021. 10. 27.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측을 사기로 고소하였다. 그러자 C은 2021. 11. 6.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서(2차)를 작성하였다. 위 계약서는 도급자로 'E B / C'이 기재되어 있는데, C의 이름 옆에만 서명이 되어 있을 뿐, 피고의 서명 날인은 없다.
- ③ C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D 명의 계좌로 3,000만 원을 송금받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, 이 법원은 2022. 11. 9. C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다(이 법원 2022고단696호 판결). 반면에 피고는 본건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박재형, 판사 조영인, 판사 임세영